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6-제22호
----------	-----------

제출연월일 2006. 4. 18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국가의 인구증가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인구유입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장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출산장려시책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관내거주 단, 출산지원금은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
- 고등학생 지원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거나, 타시.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보호자(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시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사람
- 기숙사 거주학생의 90%이상이 시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학생 또는 대학에 지원
- 전입세대 정착지원 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이상이 전입하는 세대

나. 지원내용(안 제4조)

- 출산장려시책에 관한사항 : 출산지원금, 고등학생 지원, 임신부지원,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공공시설이용,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사항 : 공공시설이용권, 쓰레기봉투지원,고등

학생지원, 대학생 또는 대학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656백만원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6.3.17~4. 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사업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일 기준으로 3년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출산장려시책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3월이 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2. 고등학생 지원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하거나, 타 시·군에서 2인이상이 전입하여 시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 지원한다.
3. 기숙사 거주학생의 90%이상이 시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학생 또는 대학에 지원한다
4. 전입세대 지원은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관내로 전입시 지원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시책에 관한사항 : 출산지원금, 고등학생 지원, 임신부지원,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공공시설이용, 쓰레기 봉투지원.
2.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사항 : 공공시설이용, 쓰레기봉투지원, 고등학생지원, 대학생 또는 대학(교)지원.
3. 기타 시장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신청이 있을시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읍·면·동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에게 「사천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0호)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
나 罰 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제21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18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의결주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7조)

-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제11조)

-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안 제17조·제18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의: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 구 조문 대비표: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6. 3. 16~4. 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호중 “읍면동사무소별”을 “읍·면·동별”로 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중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자치센터”라 하고, 같은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그 기능은”을 “그 기능을 예시하면”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중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읍·면·동”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항중

“읍면동사무소별” 을 “읍·면·동별”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읍면동장”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 제4항중 “주민자치위원회” 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6항·제7항중 “주민자치위원회” 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제4항중 “읍면동장 ” 을 “읍·면·동장” 으로하고.같은항중 “변상”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설치) 읍·면·동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제1항 전단중 “있으며” 를 “있다”로 하고,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본문중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자·사업장종사자·단체의 대표자중” 을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로, 같은항 본문중

“선출된 후보자” 를 “선정된 사람”로, 같은항 본문중 “자를” 을 “사람을”로, 같은항 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 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같은항 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 를 “선정된 사람”으로, 같은조 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 를 “당해 읍·면·동”으로, 같은조 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 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중 “읍면동장” 을 “읍·면·동장”으로 , 같은항 전단 및 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을 각각 “고문”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며,같은항 제1조중 “읍면동사무소” 를 “읍·면·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10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 다만,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

1- 市·道 (생략)

2- 市·郡 및 自治區

第1號에서 市·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 다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